

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0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(만성질환 관리)에 근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중인 사업으로서,
- 나.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효율적 기술지원을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(재위탁)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 목적 및 목표

장기목표	-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, 중증합병증 발생지연 - 건강수명 증가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감소						
중기목표	-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 - 서울시민 건강수준 향상						
단기목표 (‘22-’24년)	- 대사증후군 인지율 향상을 통한 예방 중심 건강관리사업 홍보 - 사업 대상자 대사증후군 유병률 감소 - 사업 대상자 건강수준 향상						
주요 성과 목표	구 분	2022년		2023년		2024년	
		목표	결과	목표	결과	목표	결과
	연간등록 실인원	4만명	62,290명	8만명	107,473명	12만명	-
	연간등록 실인원 중 검진사후관리 등록비율	40%	37.4%	40%	36.3%	35%	-
	취약계층 등록비율	8.7%	9.7%	7.0%	9.6%	9%	-
	6개월 추구관리율	43%	43.1%	44%	61.6%	53%	-
	위험요인 2개이하 감소비율	45%	41.8%	50%	41.8%	41%	-
	전문교육과정 참여비율	87%	97.5%	93%	97.5%	93.5%	-

나. 주요위탁내용

-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대상 집중관리 전략 제시 및 실행지원
- 국가건강검진 연계 사후관리 활성화
- 자치구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질 관리 강화
- 대사증후군 관리 대시민 인지도 확산 및 홍보
- 대사증후군 관리 콘텐츠 제작, 담당자 공통·지역별 교육 수행
-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효과 평가 및 지역자원 연계, 참여 활성화 등

다.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위탁기간: 3년 (2025. 1. 1. ~ 2027. 12. 31.)
- 위탁방법: 공개모집 (재위탁)
- 소요예산: 508,677,000 (2025년 예상금액)
- 민간위탁 추진경위

차수	기간	수탁자	수탁방법
1차	2009.6.15.~2009.12.31	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	신규위탁
2차	2010.3.1.~2010.12.31.	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	재계약
3차	2011.3.23.~2013.2.10.	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	재위탁(공모)
4차	2013.2.11.~2016.2.10.	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	재위탁(공모)
5차	2016.2.11.~2019.2.10.	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	재위탁(공모)
6차	2019.2.11.~2021.12.31.	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	재위탁(공모)
7차	2022.1.1.~2024.12.31.	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	재위탁(공모)

라. 민간위탁(재위탁) 필요성

-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현장 밀착형 상시 기술자문으로 사업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함
- 서울시민에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 계획을 제공하는 사업 제공인력들의 지역별 체계화 된 전문교육을 통한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 재위탁이 필요함

- 데이터베이스 통계 분석 등을 시행하여 대시민 건강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
- 최종적으로,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만성질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예방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므로, 지원단의 축적된 전문성 및 다양한 경험 활용을 위해 재위탁이 필요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[보건의료기본법]

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·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[국민건강증진법]

제19조(건강증진사업 등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,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.
 1.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
 2. 영양관리
 3. 신체활동장려
 5.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
 6.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·연구
 7.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
-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[지역보건법]

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

-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-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로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하거나,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,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(實費)를 보조할 수 있다.

[지역보건법 시행령]

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

-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로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4.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, 실험 또는 검사 업무
 - 5.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 의료사업에 관한 업무
-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.
-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, 실비보조,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[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]

제25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
 - 8. 그 밖에 계약의 목적·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
 - 사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 수행

- 2024. 4. : 민간위탁추진 계획 수립(재위탁)

- 2024. 4. :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(적정, 2024년 제3차)

- 2024. 7. :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완료 (79.51점, 2024년 3차)

○ 향후계획

- 2024. 8. 부터 : 시의회 동의 및 재위탁 추진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강선미 (☎ 2133 - 7594)